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업무규정

2011. 6. 22

- [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 [2.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 [3. 공공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4.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 [5.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 [6.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

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관 제4조 제15호에서 정한 공공저작권의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저작자가 되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권”이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신탁”이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공공기관이 진흥원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공저작권의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2. 공공저작물의 공동 활용 등 유통 촉진
3. 공공저작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4. 공공저작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공공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한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6. 그 밖에 신탁관리와 관련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국의 설치) 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은 진흥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분장사무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구성) ①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진흥원에 공공저작권을 신탁한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은 사무국장이 된다.

제7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의결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저작권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저작권 신탁관련 제규정 및 약관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용료 분배 및 징수) ① 진흥원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및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분배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신탁회계와 진흥원의 관리비용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과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 보고) 진흥원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 서명한 후,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공공저작권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민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저작권을 신탁 받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공공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 범위)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취득하게 될 공공저작권 중 이 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공공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범위 내에서 신탁저작권을 관리한다.

제3조(저작권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저작권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저작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이용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를 예방하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청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탁저작권 관련 정보(관리정보, 저작물 소재정보 등)를 수집·활용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계약과 동시에 이를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신탁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

제7조(자유이용허락)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대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하 “자유이용허락”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제2조에 속하는 신탁범위 내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9조(관리수수료) 위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탁관리 및 사용료 분배의 유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징수한 사용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권리의 귀속관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
2.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공공저작권이 없음 또는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유보 직전 분배시기까지 확정된 분배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등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공공저작권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였을 때 소요되는 실비
2.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에 관한 업무수속에 필요한 비용
3.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위한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요구(내용증명의 발송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그 청구액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위탁자 통지의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2. 위탁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신탁저작물이나 신탁저작권의 종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3조(권리의무 승계) ① 위탁자인 공공기관이 직제 개편, 합병 등을 이유로 신탁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탁저작권을 양수한 공공기관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자인 공공기관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
2. 위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수탁자의 시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신탁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용료 미분배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통지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권리나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4항에 의한 정산 이후에도 공공저작권 사용료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약관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탁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7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공공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진흥원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허락 범위) ① 진흥원은 신탁저작권 범위내에서 이용허락의 대상권리를 정한다.

② 진흥원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진흥원이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진흥원은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잔여 이용허락 기간까지는 그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진흥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진흥원 또는 이용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료) ① 이용자는 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이용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으로 인해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용자료 제출 등) ① 이용자는 진흥원이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진흥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

하거나 사용료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진흥원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진흥원의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용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방지조치의 적용) 이용자는 진흥원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약관 개정) ① 진흥원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약관을 개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조(자유이용허락) 진흥원이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다.

제1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료 징수) 진흥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 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진흥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고 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저작물의 단가”는 진흥원과 공공저작권을 진흥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 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진흥원과 이용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 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고 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

수록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비고 1)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 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비고 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6,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2,400
10곡 초과 20곡 까지	4,800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 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text{회비} \times 3.5\% \div \text{수록곡수} \times 50/100$$

비고 2) “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1,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 까지	5,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0,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 제작수량

비고 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
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0,000부까지	30,000부까지	50,000부까지	100,000부까지	300,000부까지	500,000부까지	500,000부초과
7,500원	15,000원	25,000원	40,000원	60,000원	75,000원	100,000원

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26,250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21,000원
1연 이용시	15,7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전편 이용시	52,50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비고 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

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 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8,925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7,350원
1연 이용시	5,2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전편 이용시	17,85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 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매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돌출 1-9단	150,000원 225,000원	150,000원 175,000원
		10-15단	3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200,000원	150,000원
		6개월 이상	2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200,000원	
		6개월 이상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날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250,000원	
		5만부 미만	300,000원	
		5만부 이상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225,000원	
		5만부 미만	275,000원	
		5만부 이상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POP, 데코 레이선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 (50.8×76.2cm)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5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비고 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표지		100,000원	60,000원
	내지		75,000원	
단행본, 원간지	표지		100,000원	
	내지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75,000원	
	내지		50,000원	
사보, 뉴스 레터, 기내지	표지		100,000원	
	내지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100,000원	
	지방지, 전문지		75,000원	
화보			100,000원	
CD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제7조(그 밖의 사용료)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제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분배대상자) 공공저작권의 사용료 분배는 진흥원에 저작권을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분배) ① 사용료의 분배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료 정산 내역서, 그 밖에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기초하여 분배한다.

② 진흥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총 사용료에서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③ 진흥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분배대상 사용료 : 전년도 1~12월까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2. 분배시기 : 익년도 2월 말

④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⑤ 그 밖에 사용료 분배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과 위탁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의 신청) ① 위탁자는 공공저작물 사용료 분배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탁저작권이 이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 2011. 6. 2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면서 수취하는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수수료)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진흥원에 위탁한 자가 진흥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진흥원과 공공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한다.

제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